

의안번호	2205593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계번호	24B513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신설(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u>환경부장관은</u>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음</u> (제1항) 1. <u>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u>(국가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을 말함)에 해당하는 하천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u>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u>	재량규정
2	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하천 기본계획)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다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u>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u>(제2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27조의2 신설(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u>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함</u> (제1항) <u>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u>(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의2 신설(국가 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1항제1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하천 • 미대상 －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하천법」 개정 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제27조제4항)하고, 하천공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근거를 신설(제59조제2항)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배수영향구간은 [참고자료 1] 배수영향(Back water effect)구간 설명자료 참고 <「하천법」 중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관련>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 ③ (생략)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u>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u>(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6.>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 8. 16.>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정리 (제1항제2호) 하천 보전 및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하천기본계획)	• 미대상 － 현재 지방하천은 5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비용은 지방비에서 국비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3	안 제27조의2 신설(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제1항) 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환경부장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2항) 국가지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시·도지사 • 미대상 - 현재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그 유지·보수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하천 보전 및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안 제7조의2제1항제2호 신설), 하천기본계획(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국가지원 지방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안 제27조의2 신설)

□ 환경부의 「2022년 한국하천일람」(2022.12.31.)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하천) 3,840개소, 29,493.59km
 - (국가하천) 73개소, 3,601.71km
 - (지방하천) 3,767개소, 25,891.88km

[표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현황

(2022.12.31. 기준)

구분		하천연장						
		계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미수립 구간	
		개소수 (개)	연장 (km)	개소수 (개)	연장 (km)	수립률 (%)	개소수 (개)	연장 (km)
합계	계	3,840	29,493.59	3,768	28,058.79	95.14	599	1,434.80
	국가	73	3,601.71	73	3,595.11	99.82	1	6.60
	지방	3,767	25,891.88	3,695	24,463.68	94.48	598	1,428.20

자료: 환경부, 「2022년 한국하천일람」(2022.12.31. 기준), 2023.11.

□ 현행법은 제59조제1항1)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원칙’으로서, 국가하천은 국고의 부담으로, 지방하천은 시·도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

- 다만,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법 제59조제2항)

※ [참고자료 1] 배수영향(Back water effect)구간 설명자료 참고

□ 개정안은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과 하천공사,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가지원 지방하천) 개정안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해당하는 하천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비용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제7조제2항²⁾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으로서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천

1) 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 (업무 및 수행주체) 개정안에 따른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 및 수행주체는 다음과 같음

[표 2]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수행 주체

	업무	수행주체	비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환경부장관	안 제25조제2항 단서
	하천공사	환경부장관	안 제27조의2제1항
	유지·보수	시·도지사	안 제27조의2제2항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정될 국가지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하천공사 유형 및 길이, 단위공사비³⁾ 등 세부내역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해당 사항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참고자료 2] 제방보강 단위공사비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배수영향(Back water effect)구간 설명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배수영향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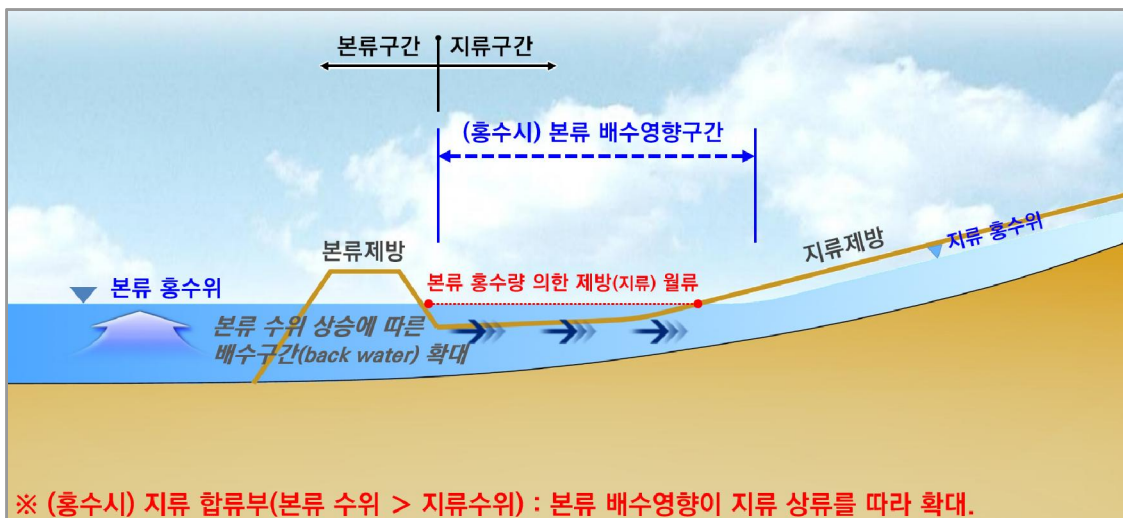
- 하천의 배수(영향)구간*은 본류 홍수위로 인해 지류의 수위가 상승하는 등 영향을 받는 구간

* 하천설계기준(2019, 한국수자원학회)

<평상시>



<홍수시>



[참고자료 2] 제방보강 단위공사비

(환경부 제출자료)

□ 제방보강(신설 및 보축) 단위공사비(2022년 기준)

- 2020~2021년의 기간 동안 환경부에서 수립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년)」*의 예상 홍수량으로 산출한 제방보강(신설 및 보축) 단가

* 환경부의 비법정 계획

<제방보강(신설 및 보축) 공사비 단가>

(2022년 기준)

구분	공 종	예상 홍수량(m^3/s) ¹⁾	하천 단위	공사비 단가(백만원)
제방 축제 (신설)	축제(가)	홍수량 200 미만	km	5,014
	축제(나)	홍수량 200 ~ 500	km	5,903
	축제(다)	홍수량 500 ~ 2,000	km	7,623
	축제(라)	홍수량 2,000 ~ 5,000	km	9,555
	축제(마)	홍수량 5,000 ~ 10,000	km	11,932
	축제(바)	홍수량 10,000 이상	km	12,586
제방 보축	보축(가)	홍수량 200 미만	km	3,675
	보축(나)	홍수량 200 ~ 500	km	4,198
	보축(다)	홍수량 500 ~ 2,000	km	5,065
	보축(라)	홍수량 2,000 ~ 5,000	km	5,975
	보축(마)	홍수량 5,000 ~ 10,000	km	7,147
	보축(바)	홍수량 10,000 이상	km	8,471

주: 1) 유량(m^3/s)은 초당 흐르는 물의 양

1.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2021~2030년)」에서 발췌

2. 교량, 배수구조물, 하도정비, 낙차공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산출한 단가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